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
부가가치세및개별소비세
특례규정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추경호 (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외국인관광객의 면세물품 구매를 활성화하고 세액환급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,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1회 거래가액 한도를 '50만원'에서 '100만원'으로, 총 거래가액 한도를 '250만원'에서 '500만원'으로 각각 상향하고,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상당액을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부터 출국 전에 환급 또는 송금받을 수 있는 면세물품의 1회 거래가액 한도를 '500만원'에서 '600만원'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8. 10. ~ 9. 19., 2023. 11. 27. ~ 12. 7.)

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

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제1호 중 “50만원”을 “100만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250만원”을 “500만원”으로 한다.

제10조의4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“500만원”을 각각 “600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면세판매장의 즉시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에 대해서는 제6조제2항제1호·제2호, 제10조의4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조(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및 개별소비세액의 환급) ① (생략)	제6조(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및 개별소비세액의 환급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면세판매자는 외국인관광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세액상당액을 차감(이하 “즉시환급”이라 한다)한 가격으로 판매한 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해당 면세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
1. 세액상당액을 포함한 1회 거래가액이 <u>50만원</u> 미만일 것	1. ----- ----- <u>100만원</u> -----
2. 입국 후 즉시환급을 받은 세액상당액을 포함한 총 거래가액이 <u>250만원</u> 이하일 것	2. ----- ----- <u>500만원</u> -----
③·④ (생략)	③·④ (현행과 같음)
제10조의4(전자판매확인서를 통한 세액상당액 환급 등의 특례)	제10조의4(전자판매확인서를 통한 세액상당액 환급 등의 특례)
①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세판매자는 부가가치세 및 개별	① ----- -----

소비세를 포함한 1회 거래가액이 500만원 이하이고, 외국인관광객이 제9조 및 이 조 제4항에 따라 출국항 관할 세관장의 반출확인을 받기로 하고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세액 상당액을 환급 또는 송금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자판매확인서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③ 제1항에 따라 전자판매확인서를 전송받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이 요구하는 경우 제10조의2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면세물품(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포함한 1회 거래가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)을 구입한 때에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하거나 송금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해당 외국인관광객에게 제9조 및 이 조 제4항에 따른 출국항 관할 세관장의 반출확인을

-- 600만원 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600만원 -----

-----.

담보하기 위하여 환급 또는 송 금하는 세액상당액을 한도로 담 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 다. ④ ~ ⑥ (생 략)	----- ----- ----- --. ④ ~ ⑥ (현행과 같음)
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	
연 락 처	(044) 215 - 4323